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5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황운하 · 이해민
신장식 · 차규근 · 이기현
강경숙 · 백선희 · 서왕진
김선민 · 최혁진 · 이광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·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·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.

이에,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소

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,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이하 “방송통신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”을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”를 “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이하 “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”을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”으로 한다.

제8조의3제1항 중 “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言論仲裁委員會(이하 “言論仲裁委員會”라 한다)는”을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”를 “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(이하 “언론중재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言論仲裁委員會”를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8條의2(選舉放送審議委員會) ① <u>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이하 “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</u>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, 방송사(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)·방송학계·대한변호사협회·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	第8條의2(選舉放送審議委員會) ①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이하 “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.

③ ~ ⑥ (생략)

⑦ 選舉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第8條의3(選舉記事審議委員會) ①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言論仲裁委員會(이하 “言論仲裁委員會”라 한다)는 選舉記事(社說·論評·廣告 그 밖에 選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, 언론학계·대한변호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-----.

第8條의3(選舉記事審議委員會) ①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-----

-----.

② -----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언

사협회·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. ③ ~ ⑥ (생략) ⑦ 選舉記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言論仲裁委員會가 정한다.	<u>론중재위원회(이하 “언론중재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</u>-----.
---	--